##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

2019. 11. 26.



##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**토 보 고 서**

#### 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1939호

나. 제 출 자 : 금천구청장

다. 제출일자 : 2019. 11. 15.(금) 라. 회부일자 : 2019. 11. 15.(금)

### 2. 제안이유

상위법령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 대상 제증명의 명칭 및 감면 규정을 정비하여 구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가. 「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"세목별과세증명서"의 경우, 종전에 는 수수료를 면제하였으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변경 (안 제6조제4항)
- 나.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의 개정에 따라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전자파일에 대한 정보공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변경(안 별표)

#### 4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1)「지방자치법」제137조, 제139조
- 2) 「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」제2조, 별표
- 3) 「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
- 4)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제7조, 별표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#### 5. 검토의견

#### 가. 개정취지

○ 본 개정안은 「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2조제1호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"세목별과세증명서"의 경우 종전에는 수수 료를 면제하였으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변경
  - ▶ 제6조제1항제10호를 삭제하고, 안 제6조제4항 신설

- 2 -

- O 수수료 징수 대상의 명칭 정비
  - ▶ 별표1. 제증명 확인 발급 사항 중 "세목별 과세(납세)증명"을 "세목별과세증명서"로 정비
    - 【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-1191(2018.6.1)】
- 「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」의 개정에 따라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않은 전자파일에 대한 정보공개 수수료를 면제 하는 것으로 변경(안 별표)

〈수수료 주요 개정내용〉									
구 분	현 행		개 정						
① 모범납세자 신청 세목별과세증명서 수수료 (금천구 수수료징수조례 제6조4항)	: 면제	⇒	감면 (400원)						
<b>❷</b> 징수대상 수수료 명칭 정비	: 수수료의 면제		수수료의 감면						
<b>७</b> ७७ ५० ७० ७ ७ ७ ७ ० ० ० ० ० ० ० ० ० ० ०	: 세목별과세(납세)증명	⇒	세목별과세증명서						
❸ 정보공개 수수료 (변환하지않은 전자파일) (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개정)	- 1건 1MB 이내 무료 : - 1MB 초과시 1MB 마다 100원	⇒	무료						

#### 〈참고〉 모범 납세자

- O 근거규정 :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
- O 모범·유공납세자 선발기준
  - 모범납세자 :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

(※ 최근 10년간 지방세 체납자 제외)

- 유공납세자 :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 세입기여 공적으로 자치구청장 추천자
- O 우리구 모범·유공납세자 선발 현황

	구		분		2019년	제증명 발급건수	비고
모	범	납	세	자	6,480명	34건	
유	공	납	세	자	9명	0건	

○ 선정방법 : 모범납세자 선정위원회 심의(지방세 전문가, 시의원 구성)

#### 다. 검토결과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2017. 2. 22.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으로 신설된 「서울특별 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에 대하여 2019. 1. 28. 서울특별시 (세무과)로부터 자치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(재) 요청에 따라 수수료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재정비하려는 것임.
-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 결과,

안 제7조제1항제11호 및 제7조제5항에서 「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

- 4 -

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모범납세자가 신청하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현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있으나,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제1항 단서규정1) 및 '모범납세자 과세증명서 면제관련 자치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(재)요청' [서울시 세무과-2148(2019.01.28.)]에 따라 수수료를 100분의 50으로 경감시키는 개정인 바,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붙임 : 관련 법령 각 1부.

<sup>1)</sup> 사용료 ·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### 관계 법 령

#### 지방자치법

[시행 2017. 7. 26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, 타법개정]

- 제137조(수수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. 다만,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39조(사용료의 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.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 <개정 2012. 3. 21.>
-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,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·징수,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 <개정 2009. 4. 1.>

- 6 -

##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

제2조(수수료의 징수기준) 「지방자치법」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"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. [전문개정 2012.9.21.]

#### **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**(제2조 관련)

35. 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민원인이 신청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1건당 800원

####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

제2조(선발) 이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「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세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에서 선발한다. <개정 2010. 1. 7., 2010. 7. 15., 2011. 7. 28., 2015. 10. 8., 2017. 3. 23., 2018. 12. 31.>

- 1. 모범납세자: 선발기준일 현재「지방세기본법」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 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
- 가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 중 서울특별시세 및 서울 특별시 자치구의 구세(이하 "서울특별시세 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는 최근 10년 간 체납사실이 없을 것.
- 나. 가목에 따른 서울특별시세 등(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, 취득세, 재 산세,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만 해당한다)을 연간 2건 이상 최근 8년간 계 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하였을 것.
- 2. 전자납세자: 서울특별시세 등을 전자고지 받아 전자적인 방법으로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
- 3. 유공납세자: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